

제1029호 2025. 10. 31.

건설동향

BRIEF_{ing}• **日,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현장관리 방안과 시사점**

- 日, '데이터 기반 현장관리' 시행 지침 및 필요 기술·데이터·가시화 정보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사전 준비 최적화'·'병목 작업 개선'·'실적 관리' 등 시공 효율화가 핵심
- 스마트 건설기술 단순 적용에서 나아가 데이터 기반 최적화 등 현장관리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유도

• **글로벌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 구조로 본 건설산업의 기회 요인**

-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 규모 약 6.7조 달러 육박 전망
- 데이터센터 인프라 가치사슬별 주요 참여자(Key player)
- AI 국가 경쟁력의 출발점: 데이터센터가 여는 건설산업의 기회

•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5.10)**

- 이슈 1 : 재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법률안에 대한 우려와 기대 공존
- 이슈 2 : 작업중지권 강화 입법...취지 달성을 위한 종합적 시각 기반 입법추진 필요
- 건설산업 관련직·간접적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5.9.22~'25.10.29)



日,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현장관리 방안과 시사점

- '시공준비 최적화'·'병목 작업 개선'·'실시간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등을 통한 실질적 '데이터 기반 시공관리 자동화' 기반 구축 -

이광표(연구위원 · leekp@cerik.re.kr)



日, '데이터 기반 현장관리' 시행 지침 및 요구 기술·데이터·가시화 정보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일본(국토교통성)은 자국 건설산업이 직면한 노동력 부족, 기업 경영 악화 등에 대응하고 국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건설 ICT 기술을 활용한 'i-Construction'을 발표하였으며, 최근인 2024년에는 해당 정책을 고도화한 'i-Construction 2.0'을 새롭게 마련함.
 - 일본은 지난 2016년 마련한 'i-Construction 1.0' 정책을 통해 'BIM/CIM 기반 설계 및 데이터 연계', '드론 등을 활용한 3차원 측량', '건설기계·장비와 ICT 기술을 융복합한 (반)자동화 시공' 등 개별 생산 작업 단위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춤.
 - 이에 이어 지난 2024년 마련한 'i-Construction 2.0' 정책을 통해서는 'BIM/CIM 데이터 기반 건설 생애주기 디지털화', '지능형 건설기계·장비 운용을 통한 시공 자동화', '데이터 기반 시공관리 자동화' 등을 제시하여 1단계 정책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기존의 생산 작업 단위 건설 ICT 기술 적용에서 나아가 건설사업관리 영역까지 기술 적용 범위를 확장함.
-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건설 ICT 기술을 활용한 기존 개별 작업 단위의 생산방식 전환뿐만 아니라, 선·후행 업무 및 작업, 공종 간 연계를 통한 낭비의 제거 등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현장 시공관리 차원의 접근도 함께 수반되어야 함.
 -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다양한 공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자재·장비·인력이 투입됨에 따라 복잡한 프로세스 및 작업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 공종 간·자재 간·장비 간·인력 간 중첩, 대기 등의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일본은 'i-Construction' 정책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현장 내 건설기계·장비의 위치정

보, 가동 상황, 시공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활용하여 작업 대기 및 낭비 최소화, 공정의 조정, 인력 배치 최적화 등 작업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현장관리 실시 요령(안)’을 마련하여 운용 중임.¹⁾

-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 현장관리’ 수행을 위한 세부 기술의 종류, 취득해야 하는 데이터 및 정보, 웹 애플리케이션 상 구현해야 하는 가시화(확인) 정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술에 관한 참고 예시 자료’도 함께 제시하여 현장 적용 및 기술 보급을 적극 유도하고 있음.²⁾

● 해당 배경 아래, 본 고에서는 일본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데이터 기반 현장관리 실시 요령(안)’ 및 관련 기술에 관한 ‘참고 예시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장관리 고도화 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국내 역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18)’,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22)’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확보, 개별 업무 단위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방식 전환 등 일부 성과를 확보함,
- 다만, 그간의 노력을 통한 기술의 개발 및 확산 외 ‘건설사업관리’ 등 현장 ‘관리’ 차원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접근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기에 일본 사례 검토를 통해 데이터 기반 현장관리 고도화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함.

‘사전준비 최적화’·‘병목작업 개선’·‘실적관리’ 등 시공 효율화 관점 현장관리 추진

● 일본의 ‘데이터 기반 현장관리 실시 요령(안)’과 관련 기술에 관한 ‘참고 예시 자료’는 크게 ‘데이터 기반 현장관리 방안’,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의 역할’, ‘현장관리 수행을 위한 관련 기술 및 데이터, 가시화 항목 예시’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현장관리 목표 및 방안) 해당 요령은 기본적으로 토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우선 추진 사항으로 건설기계·장비, 인력의 실시간 위치정보, 작업 성능 등을 활용한 ‘시공 준비 작업의 최적화’, ‘병목 작업 파악 및 개선’, ‘실시간 진행 상황 파악을 통한 계획 대비 실적 관리’, ‘실시간 위치관리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수행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이 외 현재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나, 향후 데이터 기반 현장관리를 위해 수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과거 유사 공사 실적 데이터 기반 공정 및 장비 계획 수립’,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공 계획 수립 및 관리’, ‘준공 형상 데이터와 3차원 설계 데이터를 활용한 준공검사(형상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국토교통성(2024), “데이터 활용 기반 현장관리 운영요령(안)”.

2) 국토교통성(2024), “「데이터 활용 기반 현장관리 운영요령(안)」 관련 장비 및 기술에 관한 참고 예시자료(ver.1.0)”.

〈표 1〉 데이터 기반 현장관리 목표 및 수행 내용

구 분			수행 내용
실시	시공 준비 작업의 최적화	기존 한계	• 덤프트럭 등의 도착시간 불분명에 따른 대기 또는 준비 부족으로 인한 손실
		개선	• 후행 공정 계획의 구체화·명확화를 통한 시공 준비 작업 최적화
	병목 작업 파악 및 개선	기존 한계	• 경험 기반 건설기계·장비 배치에 따른 현장 조건 변화에 유연하지 못한 대응 • 굴착 및 성토 진척도 간 불균형, 덤프트럭 수 불일치
		개선	• 일련의 공정 절차(예. 굴착→적재→운반→고르기 등)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자재, 장비, 인력 등의 정확한 가동시간, 가동률, 대기 시간 등 파악 • 현장 내 일련의 작업 공정의 병목 지점 분석 및 개선
	진행 상황 등 실시간 파악을 통한 계획 대비 실적 관리	기존 한계	• 월간 또는 주간 단위 공정 현황 파악에 따른 지연 발생, 자재·장비 긴급 확보 어려움, 자재·장비 여유량 확보 등 비효율 발생
		개선	• 개별 작업의 정확한 진척도 파악과 계획 대비 실적 간 차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 지연 조기 발견 및 대응 • 굴착·성토 공정 진도관리를 통한 적정 자재 및 장비 조정, 복수 현장 대상의 토량 배분 관리
	기타 (실시간 위치관리, 안전관리 등)	기존 한계	• 덤프트럭 운전자로부터의 직접 보고·신고 등 방식의 경우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사실 확인 시간 소요, 대응 조치 지연 등 유발
		개선	•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도를 갖춘 실시간 위치정보 기반의 덤프트럭 운행 상황 파악을 통해 법령 준수 철저, 문제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신속 대응 • 현장 내 건설기계·장비, 덤프트럭, 작업자의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작업 내용, 각종 위치 관계, 상태 등을 파악하고 중장비 접근 시 경고 등을 통한 사고 예방 • 위험 정보 수집을 통한 리스크 저감 조치와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신속한 대응 수행
비실시 (향후)	시공 계획의 정밀화	기존 한계	• 경험치 기반의 작업 항목, 절차, 소요 일수 및 장비 배치 등에 따른 낭비 및 과부하 발생
		개선	• 과거 유사 공사의 실적 데이터 기반의 공정 계획 및 장비 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기존 한계	• 계획 시점에 에너지 소비 예측량, 실시간 실적 수치 등을 파악할 수 없었기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정량적 대책 마련 및 실행 한계
		개선	• 건설기계 및 덤프트럭 가동에 따른 연료 소비량, 전력 소비량 등 에너지 사용량을 시공 계획 단계에 예상치 또는 실적치로 파악 •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공 계획 수립 및 관리
	3차원 데이터 기반 준공관리	기존 한계	•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수행해야 하기에 검사 일정 조율 및 대기, 준공 검사를 위한 자료 작성, 장기간 이동 등 많은 시간 소요
		개선	• 준공 형상 데이터와 3차원 설계 데이터를 활용한 준공검사 (측정 항목, 측정 빈도, 규격 값 충족 여부 확인)

자료 : 국토교통성(2024).

-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의 역할)** 계약상대자는 데이터 기반 현장관리 수행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실제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기계·장비를 준비하고 관련 데이터를 감독자 등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함. 또한, 감독자 등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현장관리 수행 내용을 확인·파악하는데 필요한 자재 및 자료 역시 계약상대자가 준비 및 제공토록 하고 있음.

- ‘데이터 기반 현장관리 수행 계획서’는 ‘적용 공종’, ‘활용 기계·장비 및 웹 애플리케이션 등을 고려한 수행 내용’, ‘감독자 등 발주기관의 확인 및 파악에 관한 사항’, ‘데이터 수집 장비와 사양’,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한 웹 애플리케이션’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야 함.

● (요구 기술 및 데이터 등)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현장관리 수행을 위한 세부 기능 및 데이터, 가시화(확인)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참고 예시를 제공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후행 공정 구체화를 통한 시공 준비 작업 최적화’를 위해서는 ‘덤프의 지정 영역 진입 시 건설기계 운전자에 알람’ 기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건설기계 및 덤프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웹 애플리케이션에 ‘운행 계획 경로’, ‘건설기계 위치정보’, ‘덤프 위치정보’, ‘접근 알람’을 가시화해야 함.

〈표 2〉 데이터 기반 현장관리 방안별 기술 및 데이터, 가시화(확인) 정보

현장관리		기능	데이터	가시화(확인) 정보
시공 준비 작업의 최적화	후행 공정 구체화를 통한 시공 준비 작업 최적화	덤프의 지정 영역 진입 시, 건설기계 운전자에 알람	• 건설기계 위치정보 • 덤프 위치정보	• 운행 계획 경로 • 건설기계 위치정보 • 덤프 위치정보 • 접근 알람
병목 작업 파악 및 개선	건설기계 등 가동상태 파악을 통한 병목 작업 파악 및 개선	건설기계 및 덤프 등의 가동시간, 대기시간, 가동률을 시공관리자에 제시	• 건설기계 위치정보 • 덤프 위치정보 • 덤프 적재/하차 횟수 • 가동시간, 대기시간, 가동률 • 지형의 3차원 점군 데이터	• 덤프의 운반당 작업 시간 • 건설기계 가동시간, 대기시간, 가동률 • 일정 기간 시공량
진행 상황 등 실시간 파악을 통한 계획 대비 실적 관리	굴착·성토 공정 진도관리를 통한 적정 자재 및 장비 조정	일일 시공량을 시공 관리자에게 제시	• 덤프 적재/하차 횟수 • 지형의 3차원 점군 데이터	• 덤프 운반 횟수 및 차량 수 • 일정 기간 시공량
	굴착·성토 공정 진도관리를 통한 복수 현장 토량 배분 관리	일일 시공량을 시공 관리자 및 감독자에 제시	• 덤프 적재/하차 횟수 • 지형의 3차원 점군 데이터	• 덤프 운반 횟수 및 차량 수 • 일정 기간 시공량
기타 (실시간 위치관리, 안전관리 등)	덤프트럭의 실시간 운행 정보 기반 안전관리	덤프트럭의 위치 정보를 시공관리자 및 감독자에 제시	• 덤프 위치정보	• 운행 계획 경로 • 위치정보 • 운행 상태 (경로, 속도 등)
	실시간 공사현장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현장 내 건설기계, 덤프, 작업자의 작업 내용과 각종 위치 관계,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 데이터를 시공 관리자에 제공	• 현장 및 건설기계 작업 상태 영상 데이터	• 현장 및 건설기계 작업 상태 영상 데이터 • 건설기계 및 작업자 근접 정보

자료 : 국토교통성(2024).

스마트 건설기술 단순 적용에서 나아가 데이터 기반 최적화 등 현장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데이터 기반 현장관리’ 방안을 고려할 때, 국내 역시 그간 중점 추진해 온 개별 작업 단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확산 노력에 더해 이제는 선진 사업 관리 기술 확산을 통한 사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글로벌 건설 분야의 경우 지난 2016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등장 이후 최신 IT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선진 사업관리 기법 및 솔루션 기반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³⁾
- 우리 건설산업 내 데이터 기반 현장관리 또는 사업관리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술적 고도화보다는 선진 사업관리 기법 확산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며, 크게 ‘시행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도입 유도’와 ‘선진 사업관리 기술(기법) 운용을 위한 시범사업 도입’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음.
 - 일본의 ‘데이터 기반 현장관리’를 위한 ‘시공 준비 작업 최적화’, ‘병목 작업 파악 및 개선’, ‘실시간 계획 대비 실적 관리 및 위치관리’ 등은 그간 접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국내에서도 공공 R&D 추진, 스타트업 기술개발 등을 통해 이미 적용된 바 있는 기술임.
 - 다만, 이러한 기술 또는 선진 사업관리 기법의 경우 활용 가능한 기술을 다수 개발·확보 중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 이를 고려할 때, 데이터 기반 현장관리 또는 선진 사업관리 기술(기법) 확산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 주요 기술의 선정을 시작으로 해당 기술 활용을 위한 ‘시행지침,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공 건설사업에의 적용 및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BIM 사례를 살펴보면 기술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 차원의 기본지침과 시행지침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개별 시설 분야별 실제 적용지침과 실무요령을 수립하여 입찰안내서에 반영하는 등 실제 사업 내 적용으로 이어지고 있음.
- 다음으로 선진 사업관리 기술(기법) 도입을 위해서는 고도화된 계획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이를 지원하는 통합적·협력적 발주방식을 시범사업 차원에서 도입·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고도화된 계획 수립의 핵심은 사업초기부터 계약상대자 전반의 참여를 통한 사업 불확실성 해소임. 물론, 현행 발주 방식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계획·설계 참여를 유도 중이나, 제한적 참여에 따른 성과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IPD, IPDish 등 보다 확장된 선진 발주방식 도입을 통해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CEMEX Ventures, 2025, Top 50 Contech Startups Report 2025.



글로벌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 구조로 본 건설산업의 기회 요인⁴⁾

- 시공 중심의 사업구조를 넘어 개발·투자·운영까지 아우르는 가치사슬 전 주기 역량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 -

김민주(부연구위원 · mjukim@cerik.re.kr)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 규모 약 6.7조 달러 육박 전망

- 데이터센터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핵심 IT 인프라를 집약하여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관리하는 디지털 기반 시설로, 최근 클라우드의 확산과 생성형 AI(Gen AI)의 수요 급증에 힘입어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⁵⁾
 - 2020~2024년 사이 데이터센터 용량 확충에 민간 자본만 약 1,700억 달러가 투입된 가운데 데이터센터 투자·거래 규모는 110억 달러(2020년)에서 540억 달러(2024년)로 약 5배 확대됨.⁶⁾
 - 이와 함께 디지털 인프라 투자 내 데이터센터 비중도 16%에서 47%로 급등하여 투자자 자금이 기존의 셀타워(Towers)와 광섬유망(Fiber) 등에서 데이터센터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 규모는 약 6.7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이 중 약 5.2조 달러는 AI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배경은 다음과 같음.⁷⁾
 - (생성형 AI의 확장) 생성형 AI가 텍스트 기반 활용을 넘어 코드·이미지·영상·음악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산·저장·전송 인프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 같은 수요는 기존 시설 증설만으로는 충족이 어려워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을 필연적으로 요구함.

4) 본고는 McKinsey & Company의 ‘McKinsey Themes’ 시리즈 중 2025년 10월 19일 발표된 “The definition of infrastructure is expanding. Can the world keep up?”에서 제시된 주요 인프라 유형 중에서 데이터센터 부문을 중심으로 당사자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후 작성됨.

5) 데이터센터의 정의 및 구성 요소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규은(2025), “디지털 인프라 확장 속, 데이터센터 건설 현황과 산업적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동향브리핑 참조.

6) McKinsey & Company(2025), “The infrastructure moment”.

7) 향후 AI 연산 능력(Computing power) 수요 증가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데이터센터 확충 및 신규 투자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5.2조 달러는 중간 수준의 수요(Moderate)를 전제로 한 추정치임. McKinsey & Company(2025), “The cost of compute: A \$7 trillion race to scale data centers”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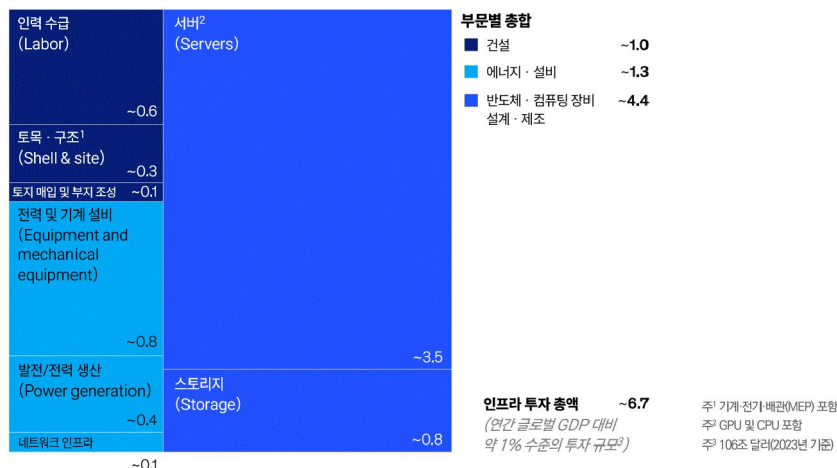
- **(산업 특화형 모델의 등장)** 최근 자동차·금융서비스·헬스케어 등 산업 전반에서 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산업별 특화된 기초 모델(Foundational model)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연산 인프라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음.
- **(AI 인프라 구축 경쟁 심화)**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⁸⁾ 및 대형 기업이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자체 AI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인프라 투자 경쟁이 가열되고 있음.
- **(주권형 AI 전략 확산)** 데이터 주권, 국가 안보, 기술 자립 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주권형(Sovereign) AI⁹⁾ 전략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 부문을 넘어 정부 주도의 데이터센터 및 AI 인프라 확보를 위한 신규 투자 압력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되는 추세임.

데이터센터 인프라 가치사슬별 주요 참여자(Key player)

● 데이터센터 가치사슬 전반에 총 6.7조 달러 규모의 자본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세부 비용 구조는 <그림 1>¹⁰⁾과 같음.

- 약 4.4조 달러는 서버·GPU 등 컴퓨팅 하드웨어 확충에 투입될 예정이며, 나머지 약 2.3조 달러는 ‘△토지 확보, △시설 건립, △전력 공급, △냉각시설’ 등 비(非) IT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데이터센터 가치사슬별 참여 주체 관점에서 살펴보면 4.4조 달러 규모의 하드웨어 확충은 IT·반도체 기술 공급 기업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비(比) IT 영역에서는 시설 건립에 연관된 건설부문(약 1조 달러)과 전력·냉각 인프라 공급 주체에 해당하는 에너지·설비 부문(약 1.3조 달러)으로 구분됨.

<그림 1> 글로벌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6.7조 달러) 구성



8) 수요 증가에 따라 컴퓨팅 성능 및 스토리지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를 의미함.

9) 특정 국가나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인공지능으로, 데이터에 대한 주권뿐만 아니라 GPU, 서버, 보안 등 AI 인프라 전반을 자국 내에서 통제·운영하여 기술 자립을 확보하는 체제를 의미함.

10) McKinsey & Company(2025), "The data center balance: How US states can navigate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p.2의 그림 재구성.

- 상기 <그림 1>과 연계하여 향후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가치사슬 전반의 투자 경쟁을 주도할 핵심 참여자(Key player)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①건설 : Builders]** 데이터센터의 부지 확보부터 설계·시공까지 물리적 인프라 구축 전반을 담당하는 주체로, 건설산업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됨.
 - (참여 주체) 시행사, 설계사, 건설사 등
 - (투자 규모) 약 1조 달러(인프라 투자 총액 6.7조 달러 중 약 15%)
 - (주요 역할) 토지 매입 및 부지 조성(Land acquisition), 인허가, 토목·골조(Shell and site - 건축 구조체(외피 포함) 및 기계·전기·배관(MEP) 공사) 등
 - (기회 요인) 최적 입지 선점 및 토지 확보, 공기 단축 및 공정 최적화, 고밀도 랙(Rack)·첨단 냉각 시스템을 고려한 설계 적용, 초기 단계부터 운영 요구 반영을 위한 숙련 인력 수급 등
- **[②에너지·설비 : Energizers]**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망 접속, 변전 설비, 냉각 시스템(수랭·액침·하이브리드 등)을 구축하여 전력 및 기계 설비(E&M) 기반을 제공함.
 - (참여 주체) 전력 공급 사업자(예 : Duke Energy, 한국전력공사), 전력·냉각 인프라 및 장비 공급업체(예 : Schneider Electric, LS일렉트릭)
 - (투자 규모) 약 1.3조 달러(전체의 약 20%)
 - (주요 역할·기술력 확보 영역) 발전·송전 인프라 확보, 변압기·UPS·냉각 장비 설치 등
 - (기회 요인) AI 연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분산전원,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고효율 냉각기술(예 : 액침냉각) 등 첨단 기술 도입이 핵심 경쟁 요인으로 부상
- **[③기술 설계·개발 :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sign]** AI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세서 및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를 설계하는 주체로, 데이터센터 가치사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참여 주체) 반도체 기업(예. NVIDIA, Intel), 서버·IT 장비 제조사(예 : Foxconn, Flex)
 - (투자 규모) 약 4.4조 달러(전체의 약 65%)
 - (주요 역할·기술력 확보 영역) 반도체(GPU·CPU·ASIC) 설계 및 제조, 대규모 데이터의 저장·처리·관리를 위한 고성능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공급 등
 - (기회 요인) 소수의 반도체 기업이 산업 공급 구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의 컴퓨팅 파워 확대 과정에서 공급 병목(Chokepoint)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 능력(파운드리) 확대, 공급망 다변화, 생산 능력 스케일업 등 추진 필요

- **[^④운영 : Operators]** 데이터센터 자산을 직접 구축·운영하며 컴퓨팅 수요를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 연산 능력 수요 추이에 따른 고효율 운영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음.
 - (참여 주체) 하이퍼스케일러(예 : Amazon Web Service), 코로케이션 사업자(예 : Equinix, KT IDC)
 - (주요 역할·기술력 확보 영역) 데이터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전력 최적화 시스템, AI 자동화 기술, 자체 설계 반도체(Custom silicon) 개발 등을 통한 성능·비용 최적화
 - (기회 요인) 투자수익률(ROI)·에너지 효율·성능 간 균형 최적화를 통해 고밀도·고효율 데이터센터 운영 역량 확보 및 시장 지배력 강화
- **[^⑤AI 설계자 : AI architects]** AI 모델·플랫폼을 개발하고, 데이터 학습 및 추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아키텍처(Architecture) 혁신을 추진하는 주체임.
 - (참여 주체) AI 모델 개발사(예 : OpenAI, Anthropic)
 - (주요 역할·기술력 확보 영역) AI 모델 학습·추론 인프라 구축, 알고리즘 및 아키텍처 최적화 등
 - (기회 요인) 자체 AI 기술 및 산업별 특화 모델 구축을 통해 경쟁 우위 확보 가능

AI 국가 경쟁력의 출발점 : 데이터센터가 여는 건설산업의 기회

- 최근 급증하는 글로벌 AI 수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데이터센터는 더 이상 단순한 IT 시설이나 데이터 백오피스(Back Office)가 아닌 이를 넘어 국가 차원의 기술·안보·전략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데이터센터는 AI 모델뿐만 아니라 ‘건설-반도체-전력·냉각 시스템-AI 컴퓨팅 아키텍처’ 등 여러 산업군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복합 생태계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현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여 전 산업 분야에 AI를 확산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데이터센터 생태계 전 단계에서의 투자 및 기술 역량 확보가 향후 기업·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현재 국내 일부 그룹은 SI(시스템 통합) 관계사·IT 운영사와의 협업 모델을 통해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음.
 - 최근 LG그룹은 LG전자(냉각 솔루션)·LG CNS(설계-구축-운영)·LG에너지솔루션(전력 시스템) 등 각 사가 보유한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 및 역량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 ‘원(One) LG’를 발표함.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1,000억원 규모의 하이퍼스케일급 AI 데이터센터에 실제 공급되는 등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음.¹¹⁾

11) 조선일보, “LG, ‘원 LG’ 앞세워 AI 데이터센터 글로벌 시장 공략” 2025.10.10, 신문기사.

- 특히 LG전자는 2025년 10월 SK엔무브·미국 GRC와 데이터센터용 액침냉각 솔루션에 대한 공동개발 및 사업 확대 관련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고밀도 랙·고전력 환경에서 핵심 요소기술인 고효율 냉각(HVAC)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며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음.¹²⁾
 - SK 그룹 또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SK에코플랜트 등의 참여로 Amazon Web Service와의 협업을 통해 울산에 비수도권 최대 규모(약 7조원 투자)의 AI 전용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임.
- 이에 국내 주요 건설기업들 또한 데이터센터 사업에서 점차 단순 시공 중심의 사업구조를 넘어 개발·투자·운영까지 아우르는 가치사슬 전(全) 주기에 대한 역량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GS건설은 2021년 데이터센터 영업·운영 자회사 디씨브릿지를 설립하고, 자회사인 지베스코 자산운용과 함께 출자·개발·운영한 ‘에포크 안양 센터’(지하 3층~지상 9층, 40MW) 프로젝트를 2024년 1월 준공하며 디벨로퍼 및 운영사로서의 활동을 전개함.¹³⁾
 - 상기 SK그룹 사례에서 언급된 SK에코플랜트는 시공을 주도할 뿐 아니라 전력·공조·통신 안정성 확보, 냉각·전력 효율화 등 고밀도 AI 환경에 맞춘 기술 요건을 반영코자 하고 있음.¹⁴⁾
- 이처럼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은 시공 및 전력·냉각·운영 기술을 아우르는 통합 생태계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주요 참여자 간 협업 구조가 본격화되고 있음.
- 상기 언급된 국내 주요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건설(Builders)-에너지·설비(Energizers) 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 주체(예 : AWS)와의 파트너십이 일부 구축되는 사례가 일반적임.
 - 또한, 최근 OpenAI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과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에서 확인되듯, 기술 설계·개발(Technology development & design)과 AI 아키텍처(AI architects) 간 전략적 연계도 확대되고 있음.¹⁵⁾
- 또한, 상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국내 건설기업은 전력·냉각·IT 등 연관 산업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시공 기술을 넘어 시스템 통합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全) 주기적 접근은 해외 건설기업 대비 차별화된 경쟁 우위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따라서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데이터센터 가치사슬 전체를 아우르는 중장기 연구개발(R&D) 투자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일련의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12) LG전자 뉴스룸, “LG전자, 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액침냉각’으로 확장한다”, 2025.10.28, 보도자료.

13) 한경, “GS건설, ‘에포크 안양’ 준공…건설사 첫 데이터센터 개발”, 2024.1.24, 신문기사.

14) 대한경제, “SK, 7조 투입해 국내 최대 AI데이터센터 짓는다”, 2025.8.29, 신문기사.

15) OpenAI, “Samsung and SK join OpenAI’s Stargate initiative to advance global AI infrastructure”, 2025.10.1, 보도자료.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5.10)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yjjun@cerik.re.kr)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

최근 약 한 달간(25.9.22~10.29)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총 617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건설산업과 직·간접적 연관이 큰 법률안은 54개 법률안이 발의됨. 이달 또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내용을 담은 법률의 발의와 함께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규제 및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이 계속됨. 특히, 최근 계속된 건설안전 강화와 관련된 입법의 경우 관련한 주무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대한 일부개정 추진에서 벗어나 연관된 법률까지 촘촘히 발의되는 확대 경향 상황으로 동일 목적 달성을 위한 중복 규제·처벌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가 뒤따르길 희망함.

이슈 1 재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법률안에 대한 우려와 기대 공존

- 최근 건설안전과 관련한 여러 입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되는 가운데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법안을 헤아려 보자면 단연코 「건설안전특별법안」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중대재해 처벌법」 등 개별 법률에서 별도 규율되던 건설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전 세계 최초 별도의 법률(특별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그러함.
 - 이와 더불어 그간 시공사 중심의 관련 규율에서 벗어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건설사업관리자)에 이르기까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책무를 규율한 점과 더불어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업종분야 매출액 3% 과징금을 부과토록 과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는 점에서 산업 모두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지난 21대 국회 시절인 '20년부터 입법이 논의되기 시작한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한 최근 관심이 집중된 것은 그만큼 건설안전 사고 저감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며, 이에 발맞추어 입법부 또한 계속된 보완을 통해 조기 법률 제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문진석 의원은 지난 6월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151호)을 속의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여 지난달 재발의함(의안번호 제13160호, '25.9.22).

- 재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핵심 개정 내용으로는 크게 ①규율 대상의 확대(건설업 → 건설업 + 타 공사업), ②영업정지에 같은 과징금(업종분야 매출액 3%)의 상한선(1천억원) 설정, ③공기·공사비 검증(심의·검토) 대상의 축소(연면적 300㎡ 건축물 등 → 연면적 1,000㎡ 건축물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하나, 여전히 「건설안전특별법안」의 법 제정 필요성을 넘어 법 도입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재발의한 법률안에서도 해소되지 못한 상황임. 이는 그만큼 법률안을 바라보는 산업계의 시각이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 특수성에 기인함.
 -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최초로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에 대한 각 사업참여자의 책무를 부여한 법률인 점과 더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도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유사 법령과의 중복규제와 과잉 처벌 규정 도입의 적절성, 법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 운영 방안의 합리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 상황이기 때문임.¹⁾
 - 예를 들어 업계가 가장 기대하는 입법 내용인 적정 공기·공사비 검증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절차 대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거나 미규율하고 있어 하위법령을 통해 제도 운용의 축소²⁾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제정을 통한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여전히 담보할 수 없음.
 - 대표적으로 법안에서는 공공공사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반영하여 발주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국가 및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율(안 제12조제3항)하고 있으나, 전체 건설산업의 약 70%에 해당하는 민간공사의 경우 이와 유사한 처리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검증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음.
-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지난 29일 국회 국정감사(국토위원회 종합감사) 시 국회-정부-업계-전문가가 머리를 맞대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로 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통상의 수준을 넘어선 전방위적 검토가 이루어지길 희망함.
 - 또한,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조기 논의 과정을 거쳐 법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내용의 제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이슈 2 작업중지권 강화 입법…취지 달성을 위한 종합적 시각 기반 입법 추진 필요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중지는 크게 3대 주체로 구분 가능하며, 각 주체의 요구 또는 법적 근거에 기반해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1) 이와 관련하여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제1016호(25.7.25.) 참조

2) 전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대한 심의나 검토를 통한 적정 수준의 반영이 아닌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또는 검증 행정력 감소 차원 안전과 관련한 직접적 비용(예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관리비 적정 반영 등)과 기간만을 대상으로 제한적 시행 등 축소 운용

- ①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제51조), ②근로자의 작업중지권(제52조), ③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제55조)
- 이 중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업중지(이하 “작업중지권”)의 경우 그간 제도의 특성상 공사 중지에 따른 사용자(원·하도급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그간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 왔으나, 특정 건설기업의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에 대한 효과가 알려지고 난 후 이의 정착·확산을 위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과 지원책 마련에 나서면서³⁾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또한 입법이 활발히 추진되는 상황임.
- 현재 작업중지권 확대를 위한 입법은 크게 ①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강화, ②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면책 확대, ③작업중지명령 위반 시 처벌 강화, ④작업중지권 발동 사유 확대 내용을 중심으로 다수의 법안이 입법 계류 중임.
- 이와 관련하여 이번 달에는 이학영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3435호) 및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제13437호)을 통한 작업중지권 관련 하도급자 보호 강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학영 의원(제13447호)과 김태선 의원(제13478호)이 각각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함.

〈표〉 현재 계류 중인 작업중지권 확대 입법 현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관련 법률	주요 내용
805호	강득구 의원	산업안전 보건법	• 기상이변 관련 근로자 작업중지권 확대
3168호	이수진 의원		• 급박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의, 작업중지권 활성화
2875호	최은석 의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작업중지권 부여
3633호	이응우 의원		• 작업중지권 사용 요건에 기상 여건 등 추가
11767호	김정호 의원		• 작업중지권 주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범위 확장 • 사업주의 작업중지 해제 시 근로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점검 및 개선 조치 선행 의무화
11936호	차규근 의원		• 근로자 작업중지권 사용 요건에 폭염·한파 추가 •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근로자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임금 감소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분 지원
12596호	김태선 의원		• 근로자 작업중지권 완화
12983호	김위상 의원	건설산업 기본법	• 고용노동부, 급박한 위험과 관련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조치에 관한 표준 규정 마련 및 사업주 지도·권고 • 사업주, 일정 주기마다 작업중지 현황 제출 의무 부여
13437호	이학영 의원		• 하위법령에서 정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 미인정 등 부당행위 금지 • 하도급자 등의 작업중지에 관한 권한 보호(작업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 의무화) • 작업중지로 인한 하도급자 불이익 금지

3) 대한경제, “민간 주도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만든다”, 2025.10.28. 신문기사 등 참조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관련 법률	주요 내용
13437호	이학영 의원	하도급법	- 하도급자의 작업중지로 인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신청 근거 마련 - 작업중지로 인한 하도급자 불이익 금지
13447호	이학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국가 차원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사업주의 작업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 보고 의무화
13478호	김태선 의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업종·사업장 별 특성에 맞는 작업중지권 기준 마련

- 그간 유명무실한 평가를 받던 작업중지권 강화를 통한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의 내용은 모두 작업중지권 확대 시 사업참여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을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합당한 방향이라 사료됨.
- 하지만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작업중지 사유에 대한 ①「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모호, ②작업중지 사유 유형별 계약상대방의 귀책 여부 판단에 대해 구체적 기준 마련이 부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우선 고려한 입법 추진이 합당할 것임.
 - 작업중지는 막대한 피해 발생 등 산업 전반에 끼치는 부작용이 상당하므로 엄격한 요건, 필요 최소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작업중지권 남용·악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3437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3478호, 김태선 의원)의 우선 입법을 통한 건설현장 작업중지권 기준 상세 마련이 선행되어 입법안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별도 하위법령 마련을 통한 작업중지 사유를 별도 구축하는 것이 아닌, 양 법률의 연계 입법을 통해 제도 적용의 혼선 최소화가 이루어지는 순차적 접근이 필요함.
 - 또한, 현행 입법안은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2차 이하 하도급자-기계장비대여업자 및 건설근로자의 관계 속에서 작업중지권 발동 시 원-하도급 거래 관계에서만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동 의무를 담고 있어 작업중지 발생 사유(책임 주체)를 고려치 않는 문제⁴⁾와 더불어 전체 거래관계 속 특정 거래만을 보호하고 있기에 이를 확대 규율함이 합당함.
- 즉,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실효성 향상을 위해서는 개별 법령 개정보다는 관계 법령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 정책 수립에 근거하여 개별 법령의 개정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4) 이와 관련하여서는 전체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작업중지 발생 사유별 책임 주체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이 순차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정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개정 방향일 것임.

- 예를 들어 타 공종의 부실공사에 따른 시설물 붕괴 우려로 작업중지권 발동 시 원도급자의 귀책이기에 원도급자가 부담(원도급자의 경우 해당 공종 하도급자에게 향후 구상권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발주자 귀책 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모두의 책임 아닌 사유(불가항력 등)인 경우 발주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율하는 것과 같이 작업중지권 발생 사유별 책임 주체 구분에 따른 부담 주체 세분화가 필요함.

건설산업 관련^{직·간접적}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5.9.22~'25.10.29)

※ **규제 강화** 표기의 경우 건설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규제 신설·강화 입법안

법률명	주요 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 [의안번호: 제13150호(한준호 의원 등 12인)] ('25.9.22.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하나, 고양시나 하남시 등 수도권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되면서 주거시설만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 등 자족시설이 부족하여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베드타운화를 고착화시키고 있는 상황 - 즉,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한계가 있고,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공장·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취득세 등이 증과되고 있어 기업 유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과밀억제권역 중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공업지역 지정에 대한 규제가 덜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필요 - (제안방향) 수도권 내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족기능 확보를 통해 경제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해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규제처벌 강화	• [의안번호: 제13153호(박성훈 의원 등 13인)] ('25.9.22.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①) 현행법은 일반 건축물 분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 절차 및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를 규정 중이나, - 건축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등 분양시장의 질서 교란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 - (제안이유②) 현행법은 분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인식 가능한 시점인 분양광고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제안방향)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거주자 우선 분양의 기준 시점을 분양광고일로 변경(안 제6조의5 신설 등)
「건설안전특별법」 규제처벌 강화	• [의안번호: 제13160호(문진석 의원 등 19인)] ('25.9.22. 법률제정 발의) - (제안이유) 건설공사는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와 공사 목적물(건축물·도로·철도 등)이 다양하며, 현장에서 다수의 건설사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와 건설종사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작업환경에 차이가 있는 상황 ▪ 특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실제 사고로 인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지는 경향이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발주자는 적절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는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 손실 대가가 예방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도록 유도 ▪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간과 비용을

법률명	주요 내용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안 제8조) ■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외 타법 공사업에 따른 시공자 포함, 이하 동일)는 다수 공종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시공계획서 작성 의무 부여(안 제15조) ■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안 제17조) ■ 시공자와 하수급시공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건설사업자의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규정(안 제31조) ■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설계자, 감리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안 제35조 및 제38조) ■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안 제42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의안번호: 제13169호(한준호 의원 등 12인)] (‘25.9.22.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수단 중 하나로써,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매우 중요 - 한편,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1기 신도시 등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비사업 관련 각종 계획의 통합 수립, 법정 주민 단체의 조기 설립을 통한 참여도 제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의 편의성 제고 등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중 ■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현행법 등 정비사업 관련 법률을 일제 정비하여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기 발표 - (제안방향) 현행법의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 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특례,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및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목적이 유사·동일한 사항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인정 특례, 노후계획도시 정비플랫폼의 운영 근거 등을 도입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 및 미래도시 전환을 차질 없이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의 주택단지에 관한 정의 도입(안 제2조) ■ 서로 연결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특별정비예정구역 간 결합을 허용하고,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의 요건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권한을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안 제15조) ■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6조) ■ 선도지구 지정에 필요한 항목 중 주민 참여도를 주민 동의율로 수정(안 제18조)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게 하고, 구성 방법, 역할 등 주민대표단의 운영·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8조의2 및 안 제18조의3) ■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방식을 법률에 근거하고, 목적이 동일·유사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는 특례 도입(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약 등을 체결한 자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요건 보완(안 제19조) ■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약 등을 체결한 자를 예비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조) ■ 공공·신택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는 특례 도입(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법률명	주요 내용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 지정권자가 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9조) ▪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위조 및 매매, 행위제한 위반, 주민대표단 무단 운영 또는 임의 구성 등에 대한 벌칙 규정(안 제40조)
「주택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3173호(안태준 의원 등 10인)] ('25.9.2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 제도를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 실시 후,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을 미리 점검하는 품질점검단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견된 경우 사업 주체는 이를 입주 전까지 조치하도록 의무화 규정 중 - 하나, 최근 신축아파트 하자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 인력 등을 갖춘 하자점검 대행 업체로 하여금 사전방문을 대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행법상 사전방문의 주체는 입주예정자로만 규정되어 있어 일부 현장에서는 입주예정자 본인 외에 제3자의 현장 출입 및 점검을 거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사전방문 주체에 입주예정자 본인 외에 가족이나 입주예정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신축아파트 입주 전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 단계에서도 건축, 구조 등 분야에 대한 시공 품질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
「하천법」	• [의안번호: 제13185호(신성범 의원 등 10인)] ('25.9.2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하천을 국토 보전상 또는 국민 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으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록 규정 중 - 그런데 최근 폭우 피해가 커지면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하천의 경우에 예산 규모 및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승격 준비를 위한 행정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 (제안방향) 하천의 폭우 피해 예방과 관련한 행정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관련 심사 및 지정 고시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방하천구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하천 지정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3208호(정준호 의원 등 10인)] ('25.9.2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 등의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해 포함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 중이나, -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하는 기관이 민간업체이고 공공기관의 검증이 재량사항으로 일부에서만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전후 및 진행 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고,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 ▪ 반면,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시 분담금 추산액 검증을 의무화해서 정비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 중 - (제안방향) 정비사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토지 등 소유자의 추가 부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

법률명	주요 내용
	며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 근거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검증하는 것을 의무화(안 제29조의3 신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3227호(손슬 의원 등 13인)] (‘25.9.2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①)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제32조제1항에서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현행법 제30조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중으로 - 이에 따라 국가는 산업별·지역별 교섭 등 초기업 단위 교섭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 ▪ 특히 소규모 업체가 많은 업종이나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업종, 청년과 고령층이 집중된 업종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렵고 단체교섭은 더욱 어려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제안이유②) 돌봄 등 노동자 평균임금 50% 이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나오는 업종은 임금, 근로시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면제 보장을 위한 예산 또는 기금 편성의 권한이 해당 업종의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있기에 이들 업종의 단체교섭을 노정교섭의 형태로 보장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 보장 필요 - (제안방향①) 해당 업종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의 60%에 이르지 않는 경우(제1호 : 서비스업), 해당 업종 근로자의 20% 이상이 저임금으로 근로장려세제를 받는 경우(제2호 : 건설업), 해당 업종의 1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90%를 넘는 경우(제3호 :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근로자가 각 20%를 넘는 업종의 경우(제4호 : 사회복지서비스, 경비 등) 당해 업종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연합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로 연대하는 동일 업종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위 노조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그 요구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이 30일 이내에 노사교섭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안 제30조의2 신설) - (제안방향②) 업종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나오는 돌봄 등 업종의 전국 단위 노동조합은 해당 업종의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정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며, 노정교섭대표는 노정교섭 결과를 실행하기 위해 법률안 또는 조례안, 예산안 또는 기금관리계획안 등을 국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제출할 의무 부여(안 제30조의3 신설)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제처벌 강화	• [의안번호: 제13233호(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인)] (‘25.9.2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정보·인력 등 현황 관리에 한정해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수리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고 처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 제기 - 또한, 국가유산수리 품질 개선을 위해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 기존 정보·인력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정보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며, -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국가유산수리업자 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에도 국가유산수리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인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자격 취득 후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법률명	주요 내용
	록 하여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 ▪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정보·인력관리를 위한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 수리 행정의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안 제14조의3 삭제 및 제54조의2 신설 등) ▪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까지 확대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안 제34조 및 제34조의2, 제62조제1항제6호의3 신설) ▪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 수료 의무화(안 제46조제2항 및 제53조)
「임금채권 보장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3262호(환경노동위원장 대안)] (‘25.9.2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①)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기에 체불피해근로자를 폭넓게 지원하면서도 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을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이 필수 - (제안이유②) 현행 「근로기준법」은 도급사업에서의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해 하수급사용자가 아닌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도 연대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에 대해서는 변제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①)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에 걸리는 시간과 인적 부담 경감 유도 ▪ 변제금의 징수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 (제안방향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 명확화를 통해 변제금 회수 강화 유도 ▪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해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분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1항)
「골재 채취법」 규제채널 강화	• [의안번호: 제13283호(정준호 의원 등 11인)] (‘25.9.2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및 방향①) 골재는 국민의 이용하는 SOC 및 건설구조물의 안전과 품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부적격 업체의 난립, 일부 탈·불법 행위의 성행 등이 이어지고 있어 - 신규 골재채취업자 등에 대한 품질, 재해 및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기능인력에 대한 사고 예방 및 골재채취 기술 보급 등 기능인력에 대한 육성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복지 실현, 건설구조물의 안전 확보는 물론 건전한 골재산업 발전 도모 - (제안이유 및 방향②) 골재는 주요 건설자재로서 건설공사를 예정된 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골재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나, 골재채취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영업정지 기간 동안 해당 건설공사에 골재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이 야기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제안이유 및 방향③) 골재채취업자 등은 품질이 확보된 골재를 공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 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나, 골재의 지속적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수시검사를 대폭 확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시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시하는 것으로 골재채취업자에게 검사 비용을 부담시킬 명분이 부족하고 더불어 골재 품질의 지속적 안전성 확보를 위

법률명	주요 내용
	해서는 품질 향상 연구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필요 - (제안이유 및 방향④) 최근 골재 수급 환경은 바다·하천 등에서 채취하는 천연골재 공급 위주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암석자원을 활용하여 골재를 제조하는 형태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안정적 골재의 공급을 위해 암석자원의 수급 체계가 중요하나, - 최근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의 여파 등 건설공사가 감소하고 있고, 발주자 또는 발주청은 건설경기 등의 사유로 암석 자원을 사도처리하거나 단순 매립 또는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등 암석자원의 공급이 제한되고 있기에 공공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암석자원을 골재원으로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공공 건설공사 예산 절감, 환경훼손 예방 및 골재수급의 안정성 확보 필요 - (제안이유 및 방향⑤)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승계기간을 명확히 하여 부당한 제재 효과 승계 방지 등 법령 운영의 미비점 개선 필요 - (상세내용) 상기 제안이유 및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현행법 개정을 추진 ▪ 신규 골재채취업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골재채취업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골재채취 기술의 보급 등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 ▪ 현행 규정은 골재의 품질 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재채취업자 등이 점검·조사 등을 거부·방해하였을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등을 마련(안 제19조제1항제6호의2, 제6호의3, 제8호의3 신설) ▪ 골재채취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 정기 품질검사의 시기·횟수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확히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 품질검사 수행, 골재 품질향상 연구 등을 위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2조의4제2항, 제8항 신설) ▪ 공공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암석자원인 토석에 대해 예산 절감, 국토 환경 훼손 방지 등을 위해 골재용 토석으로서의 효율적 활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4조의5)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잉 행정을 방지하고,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마련으로 부당한 행정제재 승계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5조)
「건축법」 규제처벌 강화	• [의안번호: 제13289호(박해철 의원 등 13인)] ('25.9.2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최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과 방치폐기물의 시멘트 소성로 처리 등이 맞물려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원료와 연료에 폐기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 ▪ 「폐기물관리법」 입법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재활용으로 포장돼 국내 시멘트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대체원료+대체연료)의 종류는 88종에 달하는 상황 - '23년 11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관리체계 선진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식 6가크롬 시험법(EN196-10)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폐기물 사용 시멘트 모두가 유럽 관리 기준인 2mg/kg을 대폭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프랑스·독일·스위스 등의 시멘트 6가크롬 함유량이 0.1mg/kg을 하회하는 수준과 크게 격차 발생 * 6가크롬 : 국제암연구소(IARC)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분진이나 흙, 안개 형태로 체내에 유입되어 폐, 호흡기, 피부, 간 등을 손상 - EU는 시멘트 내 6가크롬 허용 기준치를 2mg/kg으로 법적 규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 기준 없이 환경부와 시멘트 제조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2009년부터 자율기준 20mg/kg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참고 : 미국 기준치 5mg/kg, 중국 기준치 10mg/kg) - 국내 자율관리 기준과 세계 국가별 기준과의 현격한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화된 기준조차 각기 다른 상황에서,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 내 중금속은 납, 구리, 카드뮴, 비소, 수은 등의 검출량이 국내 기

법률명	주요 내용
	준에 적합하더라도 국민 건강에 무해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 - 특히 시멘트에 사용되는 폐기물 내 6가크롬, 납, 카드뮴 등의 물질들은 급성독성과 만성독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독성 중 금속이 함유된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위험물질인 상황 - 또한, 우리나라 주거용 건축물은 외국과 달리 난방시스템 특성상 밀폐된 공간과 바닥난방의 영향으로 인해 실내 환기가 부족해지기 쉽고, 이에 따라 폐기물 시멘트를 사용한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과 새집증후군 문제, 중금속 중독 등의 문제는 영유아, 어린이, 노년층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 - (제안방향) 국민 건강권 및 주거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 주거용 건축물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안 제52조의7 및 안 제113조제1항 신설)
「공동주택 관리법」 규제 강화	[의안번호: 제13290호(한준호 의원 등 11인)] ('25.9.25. 일부개정 발의)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할 수 있는 만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하자판정이나 분쟁조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책임 있는 결정 필요 (제안방향) 하자 판정 등에 필요한 사실조사현장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 처리기간을 합리화하고, 하자보수 이행 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하자판정 등에 참여한 모든 위원이 결과 서류에 기명날인하도록 하는 등 하자심사분쟁조정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여부 판정, 재심의, 분쟁조정을 한 때에는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및 조정서 정본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도록 규정(안 제43조제2항제8항 및 제44조제3항) -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결과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43조제3항) - 결로, 누수 등 특정 계절이 되어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하자가 발생하거나 신청자 등의 입원,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 기간을 조정 등의 법정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45조제1항, 제45조제7항 신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제 강화	[의안번호: 제13308호(김선민 의원 등 14인)] ('25.9.26. 일부개정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가 어린이 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차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 조명의 경우 야간 시간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개선 필요 (제안방향)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자에게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의무 부과(안 제11조 등)
「공정 거래법」 차별 강화	[의안번호: 제13337호(박상혁 의원 등 14인)] ('25.9.26. 일부개정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정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대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정률로 부과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의 경우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중 - 그러나 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액 과징금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로 인해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정액과징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정률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산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분쟁을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법률명	주요 내용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장 참여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률 전반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상향 조정(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제처벌 강화	• [의안번호: 제13351호(이건태 의원 등 10인)] ('25.9.29.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상은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소셜믹스를 도모하고 있으나, - 공개추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벌칙 규정이 없어, 최근 서울시에서 공개추첨 위반에 대해 현금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용인해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공개추첨 제도를 형해화하는 사례가 발생 ▪ 이는 비용 지불을 통해 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선례를 남겨 유사사례의 발생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원칙을 지킨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안기는 심각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 - (제안방향)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만 발생했던 위반 사례가 전국적인 사례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에 공개추첨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55조제6항 및 제136조제7호의2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13150호(이수진 의원 등 12인)] ('25.9.29.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위법령에서는 대상 시설의 범위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포함 - 그런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면 관계자 외 외부인 출입 증가,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해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제외(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 [의안번호: 제13368호(문금주 의원 등 10인)] ('25.9.29.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10월 현재 11개 시도 89개 시군구로 군 지역의 인구감소와 소멸 위험이 큰 상황 ▪ 통계청의 2024년 지역별 순 이동자 수를 보면, 경상남도 △9,069명, 경상북도 △8,003명, 광주광역시 △7,962명, 전북특별자치도 △6,060명, 전라남도 △3,988명, 강원특별자치도 △2,527명으로 확인되는 등 군 지역의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 - 그러나 현행법은 저소득층, 고령자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군 지역의 인구감소 특징 중 하나인 청년인구 유출 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 이는 최근 지자체에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 내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출생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은 현행법에 따라 입주자격, 공급방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입주자격을 통한 인구감소 해결이 어려운 실정 - (제안방향)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공급 방법, 임대조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항,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에 관한 사항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완화(제48조제3항 및 제49조의11 신설)

법률명	주요 내용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의안번호: 제13377호(모경중 의원 등 10인)] ('25.9.3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해당 시설이 일정 기간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사실 및 그 귀속일 등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던 임차인 등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을 고지하도록 규정(안 제25조제5항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의안번호: 제13386호(문진석 의원 등 11인)] ('25.9.3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총회가 소집되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있으며, 사업 여건 등과 무관하게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 - 또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결과를 위조·조작하거나 유출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제안방향)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 유도 ▪ 정비계획의 입안 또는 변경 시 이주수요를 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5조) ▪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6조의3) ▪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 개최계획을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안 제43조) ▪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결과를 위조·조작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5조의2 신설 및 제135조) ▪ 용적을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안 제55조, 제66조,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 ▪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공사비 분쟁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117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13388호(이학영 의원 등 13인)] ('25.9.3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물 부족 문제는 잦은 가뭄, 지역 간 물 자원의 불균형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수요의 급증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기존 수원은 한정되어 있어 안정적 물 공급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나, 현재 재이용수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공급 범위가 관할 구역 내 수요처에 제한되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재이용수 이송과 같은 광역적 공급에 한계 존재 - 또한,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나, 민간투자 방식에 의존하는 현 구조는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투자 유인을 부족하게 하여 원활한 공급을 저해

법률명	주요 내용
	- (제안방향)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효율적인 물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극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가 직접 하폐수처리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2 신설 등)
「주택법」	• [의안번호: 제13390호(손명수 의원 등 10인)] ('25.9.3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은 현행법상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주체가 별도로 심의를 신청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이 있으며, 개별 평가심의 지연 시 주택사업 인허가 지연의 원인이 되거나 과도한 보완 요구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 - 또한, 현행법상 주택건설 시 지방자치단체 등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설치하도록 규정된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등의 간선시설을 사업주체에게 대신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설치비의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 중이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주택건설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사업주체가 간선시설 대행 설치 시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의 비용 상환 의무를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18조제1항제5항, 제28조제7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13393호(손명수 의원 등 11인)] ('25.9.3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30호·30세대 이상 단독공동주택에 대한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육 및 관리가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 외 건축물의 분양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 최근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 주택 외 건축물 분양 시 이를 주거용으로 안내하거나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비주택 분야에 대해서도 분양 대행 및 표사광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 - (제안방향) 분양대행자에 대한 요건과 의무, 금지 행위를 마련하고, 건축물 표사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해당 표사광고에 대한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방안을 규정하고, 허가권자가 분양대행자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한편 분양 대행 관련 정책 수립 및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개정 ▪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만 지정하도록 하고, 분양사업자의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 신설(안 제6조의5 신설) ▪ 분양사업자 및 분양대행자의 거짓과장 정보 제공, 허위 광고, 강압적 권유 등 행위를 금지(안 제6조의6 신설) ▪ 분양사업자 및 분양대행자, 또는 광고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부당한 표사광고를 금지하고, 허가권자에게 해당 표사광고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의 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7 및 제6조의8 신설) ▪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려 타인으로 하여 건축물을 분양받도록 유인 또는 강요한 자, 부당한 표사광고를 한 자 등 이 법 개정 내용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10조 및 제12조)
「건설산업 기본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3435호(이학영 의원 등 11인)] ('25.10.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의 사유로 인해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존재하나, - 현행법상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는 규정은 존재하나, 정당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

법률명	주요 내용
	- 이로 인해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는 공사 기간의 지연이나 비용 부담,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작업중지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기에 개선 필요 (제안방향)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한 후 작업중지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지급받은 경우 그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비용을 늘리거나 줄여 지급하도록 하며, 작업중지를 이유로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게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작업중지에 관한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안 제22조제5항제2호의2 신설 등)
「행정규제기본법」	[의안번호: 제13436호(박상혁 의원 등 11인)] (‘25.10.1. 일부개정 발의) (제안방향) 규제가 도입된 이후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며,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 다양한 규제정보를 통합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데이터의 수집·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하며, 규제 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항제6호, 제18조의2 및 제2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 심사 도입(안 제7조의2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안 제1조, 제10조, 제14조제1항 및 제16조) - 신산업 분야 규제의 필요성 입증책임 부여(안 제17조의3 및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데이터 수집·활용 근거 마련(안 제36조의2 신설) - 규제 개선 추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등(안 제37조제1항) - 국제규제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38조 신설)
「하도급법」 규제 강화	[의안번호: 제13437호(이학영 의원 등 11인)] (‘25.10.1. 일부개정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작업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 - 하도급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 등에서 심각한 산업재해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비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하도급자가 납기 지연, 유휴 장비비, 간접비 등의 추가 비용을 모두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 필요 - 이로 인해 근로자 안전과 산재 예방을 위해 관련 법에 근거한 정당한 작업중지를 하더라도 비용 보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작업중지가 제한위축되는 등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기에 개선 추진 (제안방향)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작업중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두고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당한 작업중지를 구실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하도급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안 제8조 및 제1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등)

법률명	주요 내용
「산업안전 보건법」	• [의안번호: 제13447호(이학영 의원 등 11인)] (‘25.10.1.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대형 건설사 등은 자체적으로 작업중지권 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기 어려워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보고하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정책 수립·감독통계 등에 활용하도록 개정(안 제52조의2 신설)
「산업안전 보건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3478호(김태선 의원 등 10인)] (‘25.10.2.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안전인증 기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계가 사고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이후에야 개별 기계를 추가하는 사후적·단편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 - 또한, 현행법은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종별·사업장별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중지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 - (제안방향) 안전인증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주가 사업장의 특성, 작업 환경 및 공정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면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받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업종·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작업중지권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안 제24조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5항 신설, 제84조제3항)
「국가 계약법」 차별 강화	• [의안번호: 제13492호(조승래 의원 등 13인)] (‘25.10.1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에 제한을 두어 계약 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피해를 가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 중 -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망·부상자가 등이 발생한 재해로서 재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산업재해에 비해 강화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추가하여 이들의 일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개정(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산업안전 보건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3512호(김소희 의원 등 15인)] (‘25.10.10.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단순히 처벌 강화가 아닌 중대재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제안이유②) 현행법은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 등의 자율안전검사를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집행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시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의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개정(안 제5조제3항 신설,

법률명	주요 내용
	제29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6조의2 신설,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신설, 제171조, 제175조제2항 및 제4항)
「한국수자원공사법」	• [의안번호: 제13558호(이용우 의원 등 10인)] (‘25.10.1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국내·외에서 시설을 개발하여 건설하고 운영·관리를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글로벌 물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글로벌 물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나, -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를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국외사업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해외사업 수행에 명백한 한계 발생 ▪ 특히 하수도, 일반수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댐 건설 등의 사업은 해외 주주 시 국내기관 간 업무중복의 우려가 없어 제한이 불필요하므로 법적 근거 정비 필요 - (제안방향) 해외 물시장에서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또한 제한 없이 수행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안 제9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3566호(이용우 의원 등 10인)] (‘25.10.1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를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공표되는 정보는 전반적인 산업재해 발생 규모 및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단 등 제한적인 상황 ▪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빈도나 재해예방 활동, 안전 투자 규모 등은 취업자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과 복지 등 처우 이상으로 중요한 정보에 속함에도 알 권리 제한 - (제안방향)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제고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현황, 안전보건 투자의 규모, 안전보건 활동의 현황, 안전보건 관리 체제 구성,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매년 공시하도록 개정(안 제10조의2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 [의안번호: 제13570호(이용우 의원 등 10인)] (‘25.10.1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나 현실에서는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은폐되거나 축소 보고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상황으로 산업재해 사망자의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현실은 행정기관의 감독만으로는 모든 산업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 발생 ▪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 행위는 외부에서 감지하기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근로자나 관계자들이 위험 상황을 직접 목격하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발생 - (제안방향)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 발견하여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현행법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국민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안 제166조의3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13572호(복기왕 의원 등 12인)] (‘25.10.1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방향)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 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안 제39조제3항 신설)
「건축법」	• [의안번호: 제13587호(문진석 의원 등 11인)] (‘25.10.1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재에 취약한 불량 건축자재를 근절하여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화문·

법률명	주요 내용
	복합자재내화구조 등은 방화성능 등 품질 인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 대해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축자재의 제조유통 및 시공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이를 서면으로 관리하는 경우 해당 품질관리서가 준공 이후 최종적으로 허가권자에게 제출될 때까지 건축자재의 제작유통 및 시공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건축자재의 관리 체계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제작유통·시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자재의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개정안 제52조의 7 신설)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	• [의안번호: 제13589호(문진석 의원 등 10인)] (‘25.10.1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최근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유례없는 기후변화가 일상화되고 과거 압축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협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노후 시설물은 재난·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 - 하지만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는 개별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기후변화와 노후화라는 복합적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간 안전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바, 기후변화와 노후화에 특히 취약한 시설물을 선별하여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성 증진 필요 - (제안방향) 기후변화 노후화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취약 시설물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며,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강소기업과 새싹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낙후된 시설물 안전관리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에 기여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재해 발생 위험이 크거나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기후변화노후화 취약시설물”로 정의하고,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취약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받으려는 사도지사는 매년 ‘안전강화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국가는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마련(안 제7조 및 제8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특히 사물인터넷(IoT)·센서 등을 활용한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 ▪ 디지털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지원하고, 기술력과 혁신성이 뛰어난 ‘시설안전 강소기업’ 및 ‘시설안전 새싹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및 제11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 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조사 등 관라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기후변화노후화 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두도록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 재정 지원, 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핵심적인 지원 규정이 시행 후 10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유효기간 설정(안 부칙 제2조)

법률명	주요 내용
「건축물관리법」	• [의안번호: 제13593호(문진석 의원 등 11인)] (‘25.10.1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인명·재산 피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 화재의 경우 대부분 건축 안전 규제 강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외장재, 소방설비 등의 측면에서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다수인 상황 - (제안방향) 현행 안전 규제 수준에 부합하지 않아 화재 안전에 취약성을 가지는 공동주택에 대해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다수 세대,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는 만큼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들 공동주택의 신속한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기에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13597호(배준영 의원 등 10인)] (‘25.10.1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방향)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도 별도의 처분 없이 동일하게 참가가 제한되도록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 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에서 “제한한다”로 변경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의무성 강화(안 제39조제2항) ▪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도 별도의 처분 없이 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개정(안 제39조제3항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 [의안번호: 제13611호(이용우 의원 등 10인)] (‘25.10.1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하도록 규정 중 - 하지만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이 분명하지 않으며, 활동시간 등을 보장할 근거가 없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실효적으로 펼치기 어렵기에 개정 필요 - (제안방향)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감독 참여 등 권한을 분명히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무를 수행한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보는 등 그 활동을 보장(안 제23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강화	• [의안번호: 제13613호(박해철 의원 등 12인)] (‘25.10.15.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농어업 등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주거용 시설에서 생활하여 화재·한파·폭염 등 각종 재해에 노출되어 인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 이와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은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외국인과의 사회적 분리와 고착화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 ▪ 또한,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농지법」이나 「건축법」상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조항이 없어 법 집행에 한계가 존재하며,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으로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농지법」이나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아니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더불어 현행법의 ‘기숙사’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의

법률명	주요 내용
	다양한 주거 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용어 변경(안 제22조의3 신설 등)
「지방세특별제한법」	• [의안번호: 제13615호(이상식 의원 등 10인)] ('25.10.16.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3년간 감면하여 주고 있는 상황 - 그런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간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재산세 부담도 장기적으로 지속됨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공급 후 3년까지만 재산세 감면 가능하기에 개정 필요 - (제안방향)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 확대(안 제31조제8항)
「산업안전보건법」	• [의안번호: 제13621호(김위상 의원 등 13인)] ('25.10.16.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 현행 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조선업 등 각 산재 다발 업종의 현장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훈련·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하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 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안 제4조제1항제9호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법」	• [의안번호: 제13624호(김위상 의원 등 13인)] ('25.10.17.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안전 및 보건 경영 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에 나서도록 규정 중으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일부로 반영 중 - 하지만 해당 평가는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대상 공공기관이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없다는 문제 존재 ▪ 실제 지난 8월 무궁화호 열차 충돌 사망사고가 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올해 초 평가 보고서에 '선로 인접 공사'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으며, 일부 지방공기업의 경우 사업 규모나 산재 위험이 일반적인 공공기업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평가 체계에서 빠져있는 실정 - (제안방향) 현행법의 하위 고시에 근거를 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함과 동시에 대상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공기업도 추가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평가 체계의 실효성 제고(안 제8조의2 신설 등)
「공공주택특별법」	• [의안번호: 제13667호(문진석 의원 등 11인)] ('25.10.22.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워 노후화된 지역에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된 이후 23곳이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중 8곳은 지구지정 2~3년 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되어 현재 '26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있으나, 일반정비 사업으로 추진 곤란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요구가 존재하기에 개선 추진 - (제안방향) 새롭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코자 하는 요구가 존재하고 있고,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일몰을 폐지하고 사업 상시화 추진, 신속성과

법률명	주요 내용
	사업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절차 개선 또한 병행 ▪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소방성능설계 추가(안 제33조 개정) ▪ 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에 검인 절차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검인한 동의서를 활용토록 규정(안 제40조의7 개정) ▪ 복합사업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 의제되는 안·허가 사항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추가(안 제40조의8 개정) ▪ 복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60조·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 추가(안 제40조의9 개정) ▪ 권리산정의 기준일을 기존 후보지 선정일과 함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 전에 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추가(안 제40조의10 개정) ▪ 복합사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공동주택사업자와 주민대표회의에 대해 지정권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의 취소, 개선 권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 부여(안 제55조제2항 신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의 일몰 기한 폐지(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삭제)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제13673호(한정에 의원 등 10인)] ('25.10.22. 법률제정 발의) - (제안이유) 1990년대 이후 택지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등을 통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 -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등이 제정되어 이를 규율하고 있으나, 동법은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사업 주체가 소유한 경우에만 재정비 사업 실시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어 한계 내포 -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건설·매입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정비에 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은 상황 - (제안방향)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 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 및 개발 여건에 따른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사업 주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특별법 제정 ▪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된 단지만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사업의 대상으로 확대(안 제2조) ▪ 사업주체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정비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공공주택정비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추진 도모(안 제7조) ▪ 정비지구 지정 및 추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와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수립 의무 명시(안 제9조) ▪ 사업 제안자를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해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사업 주체의 신속 사업추진 지원(안 제15조) ▪ 공공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효율적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를 공공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도록 규정(안 제16조 및 제41조) ▪ 공공주택정비사업 시 고밀도 개발 등을 허용하기 위해 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 부여(안 제19조) ▪ 구역 내 기존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의 재정착을 위해 협의 양도 시 현물보상 제도 도입(안 제28조) ▪ 공공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설치 및 공공시설 조성비용을 보조하거나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 부여(안 제25조, 제34조, 제35조) ▪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보호를 위해 이주 신청,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및 임시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마련(안 제30조 및 제32조)

법률명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 [의안번호: 제13674호(안도걸 의원 등 13인)] (‘25.10.22.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최근 금리·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건설투자가 '24. 2/4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비수도권 인구감소 등에 따라 지방 주택수요가 둔화되는 등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상황 - (제안방향①)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안 제71조의2제1항) - (제안방향②)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안 제77조의3)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안 제98조의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13682호(염태영 의원 등 10인)] (‘25.10.23.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도시계획시설을 지하공동 등 한정된 공간만을 이용·설치하는 경우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이나 고가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할 필요 - 또한, 공동주택사업 등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중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는 현행법에 따라 무상 취득이 가능하나, 공공시설에 대한 일관된 판단기준이 없어 유상취득 후 소송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에 개선 필요 - 이 외에도 설치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이 기존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인·허가 의제 규정이 부재하여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여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일부 공간만을 사용하는 경우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안 제43조의2 신설) -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안 제65조제10항 신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도로 연결 허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안 제92조제1항제9호)
「건축법」	• [의안번호: 제13694호(박홍근 의원 등 11인)] (‘25.10.24.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같은 대지에 별도의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 기존 허가의 허가사항 변경으로만 가능하여 새로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 - 그러나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부지의 경우 하나의 대지 내에 수십에서 수백개 동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별도의 공장을 증설하거나 기존 공장의 내부 구조 변경에 따른 대수선 등 건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 경우 새로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어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기존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의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각각 건축시기가 다른 건축물임에도 하나의 허가로 관리되고 있어 건축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의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허가와 별개로 건축물에 대한 추가 건축이 필요한 경우 별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특례 신설(안 제11조의2)
	• [의안번호: 제13714호(박민규 의원 등 10인)] (‘25.10.27.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조사와 사후 제재 처분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

법률명	주요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차별 강화	으나, 매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및 적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기존과는 다른 적극적 예방책을 도입하고 조달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또한, 조달 기업뿐만 아니라 수요기관도 불공정행위를 행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달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부재하여 수요기관의 부당행위로 인해 조달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가 없더라도 불공정행위가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 예방책 마련 - 또한,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21조제1항, 제21조제2, 제35조제1항, 제36조 신설 등)
「지방계약법」	• [의안번호: 제13723호(윤영석 의원 등 10인)] ('25.10.27.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고, 특히 소액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신속한 계약을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중요한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 일반적인 수의계약 허용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수십 년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심각한 괴리를 보이고 있고 그 결과 현장에서는 소액 계약마저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가 제약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 - (제안방향) 법률에 정부가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경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여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 유도(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의안번호: 제13729호(윤종균 의원 등 17인)] ('25.10.27.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과 신속한 주택 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인·허가 등 ;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 - (제안방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0조의2 신설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의안번호: 제13731호(진성준 의원 등 11인)] ('25.10.27.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 사업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 주도의 사업시행 방식은 조합원 간 갈등, 시공사와의 유착, 조합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되는 부작용 발생 - (제안방향)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기간 동안 기존 토지 등 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준공 이후에 우선 공급 형태로 보상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 제고 ※ 본 법률안은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3732호)의 의결을 전제

법률명	주요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제13732호(진성준 의원 등 11인)] ('25.10.27.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방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분양계획을 수립,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을 신설하면서,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2018년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안 별표 제30호) ※ 본 법률안은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31호)의 의결을 전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차별 강화	• [의안번호: 제13761호(안도걸 의원 등 11인)] ('25.10.28. 일부개정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상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받은 경우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사업소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 - 신고가 없는 경우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조사 대상 기업 등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또한, 조달업체의 불공정 조달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부재한 실정 - (제안방향) 조달청장이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의 조달업체에 대한 부당한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는 한편,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1조 등)